

## 교원 명예(희망)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시행세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시행세칙은 본교의 교원인사 규정 제10조에 따라 명예(희망)퇴직하는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 제44조의2에 정한 퇴직수당(이하 '수당'이라 한다)의 지급절차, 결정,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 7. 1., 2023.02.28.)

**제2조(적용 범위)** ① 본 시행세칙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명예퇴직은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정년 5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에게 허가한다.

③ 희망퇴직은 본교 구조개혁에 의하여 통폐합된 학과(전공)의 소속 교원으로 통폐합 후 5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에게 허가한다.

④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명예(희망)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휴직, 연구년제 또는 6개월 이상 해외파견 중인 자
2.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
3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
4. 기타 명예(희망)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3조(수당)** ① 수당 지급액의 산정기준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를 적용하되, 비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20. 7. 1.)

②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교직원 보수 규정에 의해 매월 지급되는 봉급과 상여, 수당(정근, 장기근속, 정액급식비), 성과급(연봉제)을 합산하되,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지급된 금액의 1/6로 한다. 단, 정년 잔여 월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20. 7. 1.)

**제4조(신청절차)** 명예(희망)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(별첨 1)를 퇴직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(전공운영위원)과 대학장(기관장)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 이때의 퇴직예정일은 매 학기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5조(심의·결정)** 명예(희망)퇴직 신청자 중 퇴직자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총장은 교원의 수급 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 인원을 결정한다.

**제6조(결정통지)** 수당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교무처장이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
**제7조(사직원 제출)** 시행세칙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수당지급시기)** 수당은 퇴직 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경과조치)** 제3조는 정관 개정일(2019.11.28.)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### 명예(희망)퇴직 수당지급 신청서

신청교원 인적사항	소 속	단과대학 (기관명)		학부(과)/ 전공	
	성 명			직 급	
	현주소			연락처	(집) (핸드폰)

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자로 퇴직을 하고자 퇴직 수당지급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.

- 신청사유 :           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신청  
(해당란에 √체크)            희망퇴직에 따른 수당신청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위 원 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

학과장(전공운영위원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

대학장(기관장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

호서대학교 총장 귀하